

호주 비관세장벽 이슈

Australia Non Tariff Barriers Issue

호주, 우유 함량 10% 미만의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공고 (2023년 11월 9일 발효)



유제품 우유 함량은 제조업체 신고서 및 식품 라벨로 증빙, 이매패류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

2023년 11월 호주 농림수산부(DAFF)는 호주 검역 검사국(BICON) 공지 「[우유의 함량이 10% 미만인 유제품의 증빙 요건 업데이트](#)」와 공지 「[IFN 15-23 :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](#)」을 발표하고, 강화된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수입 요건이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

1. **배경** :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9월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을 고위험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을 수입 요건에 추가한다고 공지한 바 있음. 이번에 발표된 공지 「IFN 15-23 :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」은 사전에 공지된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이 예정대로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을 공표한 것이며, 우유의 함량이 10% 미만인 유제품에 대한 수입 요건 변경 사항도 같은 시기 발효됨에 따라 두 품목의 수입 요건 변동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

2. 대상 품목

- ① 우유의 함량이 10% 미만인 유제품
- ②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(조개, 새조개, 홍합, 굴*, 피피스(pipis, 새조개의 일종), 가리비)으로, 신선 또는 가공 상태의 것을 모두 포함함

*한국산 굴은 호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임

3. 유제품 및 이매패류 연체동물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사항

1) [우유 함량이 10%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](#)

- **기본 준수 사항** : 우유 함량이 10%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화물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10% 미만임(첨가된 물 제외)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
- **변경 사항** :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10% 미만임을 입증하는 증거 제출 방식을 변경함

[기존] 증빙 요건

상업 송장(invoice)을 통해
해당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10%
미만임을 증빙 가능



[업데이트] 증빙 요건

제조업체 신고서(Manufacturer's declaration)
또는 식품 라벨을 통해
'해당 제품의 우유 함량은 건조 중량 기준 10%
미만임을 입증하는 증거 표시 필요

2)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

- **변경 사항** : 수입 시 '수출국 정부 인증서(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)' 제출 요건 의무 적용

['수출국 정부 인증서' 제출 요건의 적용 사항]

- ①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, 수입신고서(Full Import Declarations, FID) 제출 시 '수출국 정부 인증서'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
- ② 호주로 수입되는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은 호주와 정부 인증서 약정(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)이 체결되었거나, 해당 약정을 협상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어야 함
- ③ 단, 다음의 제품은 '수출국 정부 인증서' 제출 요건에서 제외됨
 - 조미료와 소스를 포함한 즉석식품 및 상온 보관 식품
 - 건조 제품(건조한 이매패류 연체동물이 함유된 차가운 수프 믹스 포함)

※ **수출국 정부 인증서** : 호주에서 위험 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 증명서 발행 요건으로, '수출국 정부 인증'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관할 기관에서 호주에 정부 인증서 약정을 신청해야 함

4. 시행일 :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

유제품과 이매패류 수출 가능, 호주 수출 시 변경된 수입 요건에 따라 증빙 서류 준비 필요

2022년 기준 한국은 호주로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(비농축 크림과 치즈, 요구르트 등)을 수출하였으며, 가리비 조개와 새조개, 홍합, 굴 등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은 약 5만 2천 달러 규모로 수출한 바 있음. 따라서, 관련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여 **유제품의 제조업체 신고서 또는 식품 라벨, 이매패류 연체동물의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**. 특히, 2023년 12월 기준 한국과 호주는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의 정부 인증서 약정(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)이 진행 중임으로, 추후 공지되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 양식을 확인하여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출처

Chemlinked food, Australia Updates Import Requirements on Dairy and Aquatic Products, 2023. 11. 20
 호주 검역 검사국(BICON), Update to evidence requirements for goods containing less than 10% dairy, 2023.11.08
 호주 검역 검사국(BICON), Dairy_Goods containing less than 10 percent dairy_Import Conditions
 호주 농림수산부(DAFF), IFN 15-23: Mandatory certification for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, 2023.11.09
 호주 농림수산부(DAFF),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